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수정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교정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체조건과 체력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조건을 두어 임용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있어 신체조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5. 2. 18. ~ 3. 31.(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교정 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 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 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 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 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 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 ----- -----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18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17</u> <u>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u> <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u> <u>무직에 종사하거나 수용자를 직</u> <u>접 계호(戒護)하지 아니하는 사</u>	<u><삭 제></u>

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신장: 남자 165센티미터 이
상, 여자 154센티미터 이상

2. 체중: 남자 55킬로그램 이상,
여자 48킬로그램 이상

3. 시력: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색맹이 아니어
야 한다)